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037

발의연월일: 2024. 8. 21.

발 의 자:천하람・김석기・김종민

김준형 · 서왕진 · 용혜인

윤종오 • 이인선 • 이주영

이준석 • 주철현 • 한창민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채택하고 있는 단순다수대표제에서는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당선인의 민주적 대표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국회 뿐만 아니라 학계와 민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절대다수대표제의 일종인 결선투표 제를 도입하고자 함.

두 번의 선거에 따른 비용 과다 발생과 선거 과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선투표일은 본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하고 결선투표운 동은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 등으로 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인이 없는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결선투표에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안 제191조제1항,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9 신설 등).
- 나. 결선투표일은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함(안 제194조의6 신설).
- 다. 결선투표운동은 선거공보(관할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한정함(안 제194조의8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 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 2. "결선투표"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어 유효투표의 최고득표를 얻은 후보자와 다음 순위의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후보자 전부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때에는 선거공보를 전자문 서로 변환한 자료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 회가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는 선거공보 전자문서 자료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각 2回 이내"를"각 2회 이내(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결선투표의 경우 결선투표운동기간 중 각 1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각 5回 이내"를 "각 5회 이내(시·도지사선거 결선투표 의 경우 각 2회 이내)"로 한다.

제7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選擧運動期間중 政黨 또는 후보자를 選擧人에게 알리기 위하여"를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거인에게 알리거나 결선투표 운동기간중 후보자를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로 한다.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제82조의2제2항제1호 중 "1회 이상"을 "1회 이상(시·도지사선거 결선투표의 경우 결선투표운동기간 중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자치구·시·군의장 선거의 후보자, 자치구·시·군의장 선거 결선투표의 후보자"로한다.

제15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 • 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다만, 결선투표를 하는 때에는 선거일에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의 게재순위별로 결선투표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한다.

제19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다수"를 "과반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 · 공고 · 통지)

다만,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2장의2(제194조의2부터 제194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의2 결선투표

- 제194조의2(결선투표 실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제194조의3(결선투표 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개표결과 결선투표를 하게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장에게 통지하고 결선투표를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결선투표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94조의4(결선투표기간) 결선투표기간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가 결선투표를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 까지로 한다.
- 제194조의5(결선투표운동기간) 결선투표운동기간은 결선투표기간 개시 일부터 결선투표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 제194조의6(결선투표일) 결선투표일은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제194조의7(결선투표를 위한 선거인명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위하여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는 결선투표에도 효력이 있다.
- 제194조의8(결선투표운동) ① 결선투표운동이란 결선투표운동기간 동 안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을 말한다.
 - ② 결선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의 따른 방법에 한정한다.
 - 1. 제65조에 따른 선거공보. 이 경우 제65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에 의한 방법을 말한다.
 - 2. 제71조에 따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 3.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제194조의9(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결선투표의 당선인 결정)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퇴 또는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

에서 다수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 장이, 제2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선된 때에는 지방의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결선투표에 관하여는 제18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 원회"로 본다.
- 제194조의10(결선투표 및 개표) 결선투표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는 제10장 및 제11장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선투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1.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사람을 말한다.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결선투표"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어 유효투표의 최고득표를 얻은 후보자와 다음 순위의 득표를 얻은 후보자(다음 순위의 득 표를 얻은 후보자가 2명 이상 인 때에는 그 후보자 전부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다시 투 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 을 말한다. 제65조(선거공보) ① ~ ⑤ (생 제65조(선거공보) ① ~ ⑤ (현행 략) 과 같음) ⑥ 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후단 신설>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때에는 선거공보를 전자문서로 1. · 2. (생 략) ⑦ ~ ⑭ (생 략)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① 本 候補者와 候補者가 지명하는 演說員은 所屬政黨의 政綱・정 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 弘 報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 學運動期間중 텔레비전 및 라 디오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 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이용한 演說을 할 수 있다.

- 1. · 2. (생략)
- 3. 地域區國會議員選舉 및 自治 區・市・郡의 長 選舉 候補者가 1回 10分 이내에서 地域放送施設을 이용하여 텔

변환한 자료를 같이 제출하여
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
원회가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는 선거공보 전자문서 자
료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⑦ ~ ⑭ (현행과 같음)
세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①
- .
1. • 2.(현행과 같음)
3

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u>각</u> 2回 이내

- 4. (생략)
- 5. 市・道知事選舉
 候補者가 1回 10分 이내에서
 地域放送施設을 이용하여 델
 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u>각</u>
 5回 이내
- ② ~ ③ (생 략)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説 의 放送) ① 텔레비전 및 라디 오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 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 다]이 그의 부담으로 第71條(候 補者 등의 放送演說)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외 에 選擧運動期間중 政黨 또는 후보자를 選擧人에게 알리기 위하여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 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 黨이 당해 選擧의 候補者중에

<u>각</u>
2회 이내(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결선투표의 경우 결
선투표운동기간 중 각 1회)
4. (현행과 같음)
5
5회 이내(시·도지사선거 결선
투표의 경우 각 2회 이내)
② ~ ⁽¹³⁾ (현행과 같음)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의 방송) ①
선거운동기간중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거인에게 알리거나
<u>결선투표운동기간중 후보자를</u> 서거이에게 아리기 의하여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演說을 放 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編輯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放 送하여야 하며, 선거구단위로 모든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공 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政 黨 또는 候補者가 그 演說을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 ④ (생 략)

-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생 략)
 - ②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1.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주관 대담·토론회) (현행과 같음) ②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현행과 같음) ②	
주관 대담·토론회) (현행과 같음) ②	② ~ ④ (현행과 같음)
음) ②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②	주관 대담·토론회) (현행과 같
	승)
1 <u>1회 이상(시·</u>	②
1 <u>1회 이상(시·</u>	
<u>1</u> 회 이상(시·	
	1
	<u>1</u> 회 이상(시·
	도지사선거 결선투표의 경우

2. (생략)

③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 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 구국회의원선거 및 <u>자치구·시</u> ·군의 <u>장선거의 후보자</u>를 초 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 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 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 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 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 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④ ~ ⑭ (생 략)

- 第150條(投票用紙의政黨・候補者의 掲載順位등)①・②(생 략)
 - ③ 候補者의 掲載順位를 정함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현재 國會에서 議席을 갖고 있는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國會에서 議席을 갖고 있지 아니한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無所屬候補者의 순으로 하

결선두표준공기간 궁 1의 이
<u>상)</u>
2. (현행과 같음)
③
<u>자치구·시·군</u>
의 장 선거의 후보자, 자치구ㆍ
시・군의 장 선거 결선투표의
후보자
<u>.</u>
④ ~ ⑭ (현행과 같음)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
자의 게재순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 </u>

고, 政黨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서 議席을 가지고 있는 政黨, 國會에서 議席을 가지 고있고 있지 아니한 政黨의 순으로한다. <단서 신설>

④ ~ ⑩ (생 략)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 選人의 決定・公告・통지)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에 있 어서는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 가 有效投票의 <u>다수</u>를 얻은 者 를 當選人으로 決定하고, 이를 당해 地方議會議長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u>다만</u>,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年長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② · ③ (생 략) <u><신 설></u> <신 설>

<u>다만,</u> 결선투표를
하는 때에는 선거일에 투표용
지에 기재된 후보자의 게재순
위별로 결선투표 후보자의 게
재순위를 정한다.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
선인의 결정·공고·통지 <u>)</u> ①
<u>과반수</u>
<u>다만, 후보자가 1명</u>
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
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
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장의2 결선투표
제194조의2(결선투표 실시) ①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 보자가 없는 때에는 결선투표 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최고득표자 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고득 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신 설> 제194조의3(결선투표 공고) ①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개표결과 결선투표를 하게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 원회는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장에게 통지하고 결선투표를 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결선투표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4조의4(결선투표기간) 결선투 표기간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가 결선투표를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후 7 일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94조의5(결선투표운동기간) 결 <신 설> 선투표운동기간은 결선투표기 간 개시일부터 결선투표일 전 <신 설>

<신 설>

<신 설>

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제194조의6(결선투표일) 결선투표 일은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 로 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94조의7(결선투표를 위한 선 거인명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선거를 위하여 제44조에 따 라 확정된 선거인명부(거소투 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는 결선투표에도 효력이 있다.

제194조의8(결선투표운동) ① 결 선투표운동이란 결선투표운동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이루 어지는 선거운동을 말한다.

- ② 결선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의 따른 방법에 한정한다.
- 1. 제65조에 따른 선거공보. 이 경우 제65조제6항 후단의 규 정에 따른 관할선거구선거관 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에 의한 방법을 말한다.
- 2. 제71조에 따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 3.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

<신 설>

회

제194조의9(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결선투표의 당선인 결정)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 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의회의장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퇴 또 는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1명 이 된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 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 원회의 통지에 따라 해당 지방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 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선된 때에는 지방의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

<신 설>

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결선투표에 관하여는 제187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 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 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제194조의10(결선투표 및 개표) 결선투표의 투표 및 개표에 관 하여는 제10장 및 제11장을 적 용한다.